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석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27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6일

발 의 자 : 전석기 의원 (1명)

찬 성 자 : 성흠제, 홍성룡, 최웅식,
문장길, 김기대, 김평남,
임종국, 김달호, 김수규,
오한아, 이승미, 이준형,
김화숙, 이석주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기타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5호)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

나. 설계심의분과위원 인원 조정(안 제5조제2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다. 기타 인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5호 중 ‘영 제17조제2항제3호’를 ‘영 제17조제2항제4호’로, 제6호 중 ‘영 제17조제2항제4호’를 ‘영 제17조제2항제5호’로 하고, 제7호 중 ‘영 제19조제4항제4호’를 ‘영 제19조제4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50명 이내”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능) ① (생략) 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u>영 제17조제2항제3호</u>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6. <u>영 제17조제2항제4호</u>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7. <u>영 제19조제4항제4호</u>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8. (생략) 9. (생략) 10. (생략) ② (생략)</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 제17조제2항제3호</u> 가목, <u>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u></p> <p>6. <u>영 제17조제2항제4호</u>----- ----- ----- ----- -----</p> <p>7. <u>영 제17조제2항제5호</u>----- ----- ----- ----- -----</p> <p>8. <u>영 제19조제4항제5호</u>----- ----- -----</p> <p>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생략)</p> <p>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 (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 명을 포함한 <u>5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50명 이상 70명 이내</u>-----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